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월간 뉴스레터

2017년 2월호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Contents

회계정보

- 신국제회계기준 시행관련
기업 및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

세무정보

- 2017년 양도소득세 개정사항
- 한-홍콩 금융정보자동교환협
정 서명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
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
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세계 8대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Horwath
International**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의 Newsletter 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Memb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전화번호 : 02-316-6659(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horwath.co.kr

Website : www.crowehorwath.co.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신국제회계기준
 시행관련 기업 및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신국제회계기준(*) 시행관련 기업 및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 **18.1.1. 시행:** 금융상품, 수익 / **'19.1.1. 시행:** 리스

2018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하 “신국제회계기준”)은 기업의 업무처리방식에 큰 변동을 초래하는 등 파급효과가 크므로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어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알려드립니다.

(1) 개요
신국제회계기준 주요 변경 내용

- 금융상품(IFRS 9):미래 예상 신용손실 조기 인식(발생손실모형→기대손실모형), 분류기준 변경(4개→3개) 등
- 수익(IFRS 15): 거래유형별(재화, 용역, 이자, 로열티, 배당, 건설계약)→모든 유형 적용 5단계 수익인식모형 도입 등
- 리스(IFRS 16): 금융리스(재무제표 반영) 및 운용리스(재무제표 미반영)로 구분→모든 리스계약을 재무제표에 반영

기업의 유의사항
(2) 기업 및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1) 기업

- 신국제회계기준은 기업의 경영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행준비에 큰 관심을 가질 필요
- 신국제회계기준 시행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물적·인적 자원을 배분
- 신국제회계기준 시행시기(조기적용 가능) 및 방법에 대한 결정 및 신국제회계기준의 예상 효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수행
 - *①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에 필요한 시스템, 절차, 내부통제 마련 등의 이행계획 수립, ②약정 또는 규제상 재무비율, 법인세, 배당, 성과급 지급 등 관련 영향 파악 등
- 신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정보를 시행일 이전에 충실히 공시할 필요
- 신국제회계기준 적용과 그 영향에 대해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가능한 정보를 '16년 재무제표 주석과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
 - * 시행일 이전에도 개정 기준서 적용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시해야 함(K- IFRS 1008.30)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2) 외부감사인

- 중요한 회계적 판단과 추정의 개발, 기업의 내부통제 신뢰성, 공시의 적절성 등 신국제회계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외부감사 철저

향후계획
(3) 향후계획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시행 준비 및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17년 중 신국제회계기준 시행 관련 주식공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는 감리업무 등에 반영 예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
법인세 개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2호 '법인세' 개정
(1) 개정 내용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회사채 등)의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관련 내용 등을 명확히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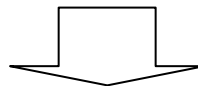
채무상품의 미실현손실(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은 예상 회수방식[중도매각, 만기보유(만기까지 보유하여 원금과 이자를 회수)]에 관계없이 일시적차이로 인식

현금흐름표 개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1) 개정 내용

채무채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변동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 간 연계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신설)

개정전 >

<재무상태표 >			<현금흐름표 >		<주석 >	
	20X2	20X1		20X2		20X2
부채			재무활동 현금유입		(비현금흐름)	
단기차입금	9,700	10,000	장기차입금의 차입	1,000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거래	
금융리스부채	3,500	4,000	재무활동 현금유출		금융리스자산 취득	300
외회사채	1,400	1,600	단기차입금 상환	(500)	(금융리스부채의 증가)	
장기차입금	1,000	-	금융리스부채 상환	(800)	(사업결합)	
			외회사채 상환	(300)	취득일의 인수부채 공정가치	
					단기차입금	200



개정후>

개정에 따른 추가 공시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용>					
	20X1 (기초)	재무 현금 흐름	비현금 변동		20X2 (기말)	
		취득 (증가)	사업 결합*	환율 변동		
단기차입금	10,000	(500)	-	200	-	9,700
금융리스부채	4,000	(800)	300	-	-	3,500
외화사채	1,600	(300)	-	-	100	1,400
장기차입금	-	1,000	-	-	-	1,000
재무활동 관련 총부채	15,600	(600)	300	200	100	15,600

* 종속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에서 생기는 변동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정
(1) 개정 내용

- (수행의무)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수행의무)의 식별기준을 명확히 하고^{*1}, 약속을 식별하는 목적^{*2}을 추가
 - *1 재화나 용역 →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
 - *2 재화나 용역의 개별적 이전인지 재화나 용역이 결합된 품목의 이전인지 판단
- (본인 vs. 대리인) 본인·대리인 판단 원칙^{*1}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판단을 돕기 위한 지표를 수정^{*2}
 - *1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통제하면 본인(재화나 용역의 공급자), 그렇지 않으면 대리인(재화나 용역 공급을 주선)에 해당
 - *2 '대리인임을 나타내는 지표'를 '본인임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정
- (라이선싱)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라이선스(지적재산에 대한 접근권)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판매·사용기준 로열티 규정의 적용대상^{*}을 구체화
 - * ① 그 로열티가 지적재산의 라이선스에만 관련, ② 로열티가 관련되는 지배적 항목이 라이선스인 경우

주식기준보상 개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1) 개정 내용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 시 고려할 사항^{*} 및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변경 시 조건변경 회계처리를 명확화^{**}
 - * 고려해야 하는 조건(가득, 비가득)의 반영방법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같음을 명시

** 조건변경일에 주식결제형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현금결제형 관련 부채는 제거하며, 제거된 부채와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

■ **시행시기**

- **법인세, 현금흐름표** 개정사항은 '1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수익인식, 주식기준보상 개정사항은 '18.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모두 조기적용 가능)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00

세 무 정 보

2017년 양도소득세 개정사항

2016.12.20(화)에 공포된 세법 개정안 및 관련 수정안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비교과세 도입(소법 §97의 2)

<개정이유> 제도 합리화

현 행	개 정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적용요건: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 등을 5년 이내 양도시 ○ 적용방법: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양도세 과세하고,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 적용배제 사유: 수용 등으로 양도,	적용배제 사유 추가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양도세액 보다 적은 경우

<적용시기> '17.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소법 시행령 §157④)

<개정이유> 과세대상자 범위의 단계적 확대

구 분	현 행	개 정	
		2018. 4. 1 이후	2020. 4. 1 이후
유가증권시장	지분을 1% 또는 시가총액 25 억원 이상	1% 또는 15 억원이상	1% 또는 10 억원이상
코스닥시장	지분을 2% 또는 시가총액 20 억원 이상	2% 또는 15 억원이상	2% 또는 10 억원이상

<적용시기> '18.1.1.('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소법 §94①, 소득형신설)

<개정이유> 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를 감안하여 비상장주식 대주주범위 합리적 조정

현 행	개 정
비상장주식 양도시 중소기업 소액주주 우대세율(10%)이 적용되지 않는 대주주(세율 20%)의 범위 - 지분율: 2% 이상 - 시가총액: 25 억원 이상	- 지분율: 4% 이상 - 시가총액: ('18.4.월) 15 억원 이상

<적용시기> - (지분율) '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시가총액)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소법 시행령 §159의 2①)

<개정이유> 코스피 200 옵션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점을 감안

현 행	개 정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코스피 200 선물, 옵션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추가 - 코스피 200 ELW

<적용시기> '17.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일시적 2주택 적용시 잔존주택의 양도기간 연장(소득령 §155①)

<개정이유>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잔존주택 처분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현 행	개 정
다음의 일시적 2 주택의 경우 1 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 -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3 년 이내 양도 - 수용 등으로 종전주택의 일부가 양도된 후 3 년 이내 잔존주택을 양도	잔존주택 양도기간연장: 3 년 - > 5 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잔존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소득법 §118의 9, 소득령 §178의 7~11)

<개정이유>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

현 행	개 정
<신 설>	① 국외전출세 납세의무자 - 상장주식: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에 해당하는 대주주 - 비상장주식: 20%의 양도소득세를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대주주 ② 간주 양도가액 산정방법 - 상장주식: 기준시가(국외전출일 이전 1 개월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 비상장주식) i) 매매사례가액(국외전출일 전후 각 3 개월), ii) 기준시가(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를 3:2 로 가중평균한 가액)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 ③ 납부유예 관련 세부사항 - 요건: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담보(§29) 제공 및 납세관리인(§82) 지정·신고 - 기간: 최대 5 년으로 하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학(§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10 년 - 납부유예 관련 이자상당 가산액: 연 1.8%

<적용시기> '18.1.1. 이후 국외전출하는 분부터 적용

박물관, 미술관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83, 부칙§1)

<개정이유> 문화시설 이전 지원

현 행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이전시 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 ① 적용대상: 등록 후 3년 이상 운영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② 적용요건: 이전 목적으로 건물 및 토지를 '19.12.31까지 양도 ③ 사후관리: 이전하지 않거나 이전·개관 후 3년 내 폐관·처분시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적용시기> '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한- 홍콩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

우리나라와 홍콩은 2017.1.23일 홍콩 국세청에서 「한- 홍콩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동 협정에 따라 양국의 과세당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등과 관련된 주요 금융정보(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등 식별정보, 계좌정보 및 금융정보 등)를 '19년부터 매년 교환하게 됩니다.

양국은 '16년 발효한 한- 홍콩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이 요청할 경우 과세정보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으나, 금번 협정 체결을 통해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채널이 확보됨으로써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양국간 정보 교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러한 양자간 협정*을 통해 역외금융정보를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14.10월 서명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서도 다른 나라와의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45개국과 정보교환을 할 예정이며 2018년에는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31개국을 추가해 금융정보를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요 역외 금융센터로부터의 과세정보 수집 기반 확대하여 역외탈세 방지를 강화할 전망입니다.

최신 세무예규 · 판례**■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조세조약과 국내법 사이의 우열관계를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미국은 한·미 조세조약의 체결 이후에 국내법으로 미국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미국 원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였고, 한국 역시 한국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경우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한국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한국의 과세권 행사에 관하여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어 한국 원천소득으로 합의하였다면, 이와 같은 합의는 한·미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 씨(C)호가 예정한 조약의 적용, 특히 특정 소득항목의 원천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데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상호합의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볼 것이므로 한국은 그에 따라 한국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내에서 따로 조약 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님. (대법2015두2611, 2016.12.15).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뜻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은 이러한 인건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요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됨. (조심 2016광1337, 2016. 12. 16).

업 무 소 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59,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horwath.co.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 Swiss association. Each member firm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member.